

도움이 될 정보

"아동 학대 및 방치 신고: 보고자를 위한 가이드" 가 Minnesota Department of Human Services(미네소타 휴먼 서비스 부서) (DHS)의, <http://mn.gov/dhs/>에서 영어 또는 스페인어로 제공됩니다. 검색 시 "child protection"을 사용하세요.

United Way 211(유나이티드 웨이 211)
(도움이 필요한 경우 첫번째 전화할 곳)
1-800-543-7709

National Child Abuse Hotline
(국립 아동 학대 핫라인)
1-800-422-4453

지역 아동 보호 사무소
지역 전화번호를 확인하거나
SafeEnvironmentSPM.org 에서 Report Abuse
를 클릭하면 지역 오피스 연락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생존자 지원
세인트 폴 미니에폴리스 대교구는 독립된 전문
케이 시스템인 Canvas Health 와 파트너를 맺고
주 7 일 하루 24 시간 프라버시가 보장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상담을 해드립니다 (612-379-
6363). 대교구의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651-291-4475).

어린이가 당장 위급한 경우, 911 로 전화

보고 처리의 개요

1. **적절한 관계 부서에 문의** –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카운티의 지역 사법 집행 기관이나 아동 보호 기관.
 - SafeEnvironmentSPM.org 에 나열된 카운티별 연락처를 참고.
2. 아동, 부모/보호자, 의심되는 학대자 및 기타 관련자의 식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
3. 사건 전말에 대한 가능한 한 많은 세부 정보를 보고.
4. 의심되는 가해자가 일하거나 봉사하는 교구나 카톨릭 학교의 담당자에게 연락.
5. 의심되는 가해자가 성직자, 부제, 성직자 또는 대교구 내의 교구 및 카톨릭 학교의 평신도 지도자일 경우, 대교구에 연락.
6. **신고 내용 및 보고 대상에 대한 정보를 문서화하고 보관.**



Office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Youth
(어린이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사무소) (OPCY)

아동 학대 및 방치가 의심될 때 신고하는 방법

교구나 카톨릭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중요한 정보

미성년자(18 세 미만 아동)가 학대 당하고 방치되고 있음을 알게 되거나 그렇게 믿을 만한 이유가 있을 경우 교구나 카톨릭 학교의 모든 직원과 봉사자는 반드시 24 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교구나 카톨릭 학교의 성직자를 포함한 직원 및 봉사자는 미네소타 주법(Minnesota Statute 626.556)에 의해 위임받은 보고자로서 24 시간 이내에 적절한 관계기관에 아동의 학대나 방치를 신고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형사책임을 받게 됩니다.

법에 의거하여, 위임받은 보고자는 주말과 휴일을 제외하고는 72 시간 이내에 관련 기관에 서면 보고를 후속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세부 절차

1. 학대가 발생한 카운티의 법률 집행이나 아동 보호 기관에 전화.

참고: 학교장이나 종교 교육 이사와 같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전화 통화시 이 사람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를 의심할 이유를 첫번째 인식한 사람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2. 다음과 같은 관련자 식별을 위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

- 의심되는 가해자에 대한 정보
- 어머니, 아버지의 성명 및 다른 이름을 쓴 적이 있다면 그 이름 또한 제공.
- 알고 있다면 부모, 아동 및 의심되는 가해자의 생년월일
- 의심되는 학대/방치가 발생한 위치

3.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 담당자에게 전달하되 최대한 자세히 설명. 예:

- 신고하는 사건은 언제 발생했습니까?
어제, 일주일 전, 한 달 전 등.
- 어린이가 어떻게 부상을 입었습니까?
주먹으로 머리 때리기, 벽으로 밀치기, 부적절한 곳 만지기 등.
-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아이의 오른쪽 허벅지에 2 인치의 보라색

멍이 있거나 아이의 등에 5-6 인치 길이의 5 군데 빨간줄이 나있거나 아이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당했다고 폭로 했음. 등등.

- 의심되는 학대/방치가 얼마나 자주 발생했습니까?
만성적으로 일어났거나 처음 발생한 일이지, 또는 잘 모름 등.
- 조사에 도움이 될 가족사를 알고 있습니까?
*펜실베이니아 ** 타운에서 최근에 가족들이 이사왔습니다.*

4. 의심되는 가해자가 일하거나 자원봉사하는 곳의 책임자에게 연락.

- 본당의 신부 또는 행정 책임자 또는 카톨릭 학교 교장.

5. 의심되는 가해자가 성직자, 부제 성직자 또는 모든 교구나 카톨릭 학교의 평신도 리더인 경우, 대교구에 연락.

- Ministerial Standards and Safe Environment 디렉터에게 전화 (651-290-1618).

6. 신고 내용을 문서화하고 보관; 보고 날짜와 시간, 보고를 받은 법률 집행이나 아동 보호 기관 및 사람의 이름. 또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취한 모든 단계를 문서화합니다 (예를 들어, 대교구, 학교장에 한 문의 등).



다음을 명심하세요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사항을 간단히 신고합니다. 법률 집행이나 아동 보호 기관은 당신의 신고 이후 모든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것입니다.

당신의 역할은 아이가 당신에게 알린 내용 또는 당신이 관찰한 것을 간단히 보고하는 것입니다.

아동 학대나 방치에 대한 직접적으로 알게 된 개인은 누구나 사법시판이나 아동 보호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독자, 관리자 또는 기타 공동 작업자에게 우려하는 사항을 신고하는 것으로 이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법률 집행이나 아동 보고 기관에 보고할 경우, 당신의 감독자, 예를 들어 학교장이나 종교 교육 책임자에게 전화 통화에 대한 증인이 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